의과대학 교원인사 규정(3-3-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하 "교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① 의과대학 교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그 중 1/3은 선출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
 - ③ 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등에 대해 심의한다.
 -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의무부총장의 재가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4조(신규임용) ① 신규 임용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의 직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신규 임용 대상자는 다음의 각 직급별 최소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조교수		부효	교수	교수		
구분	기초 교원	임상 교원	기초 교원	임상 교원	기초 교원	임상 교원	
최소 연구 실적	200%	200%	1000%	200%	1000%	200%	
SCI 논문 최소 편수	1편		4편		6편		

- 주1) 기초교원의 경우 조교수로 임용할 경우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용할 경우 연구실적은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인정한다.
- 주2) 임상교원의 경우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의 업적을 인정한다.
- 주3)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준 기간을 초과하여도 인정한다.
- 주4) 임상교원의 경우 연구실적이 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주5) SCI 논문 최소 편수는 심의 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한다.
- 주6)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의학교육학 등 인문사회의학 전공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SCI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주7)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하여 의과대학장(의료원장)의 제 안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03.21.)

제5조(재임용 절차) 재임용 절차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6조(재임용 심사기준) 각 직급별 재임용 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1. 조교수 및 부교수 최초 재임용 기준 (개정 2015.1.1., 2016.9.1. 2018.06.08)

구분	기초교원	임상교원		
최소 소요 년수	2년	2년		
최소 연구 실적	100%	100%		
SCI 논문 최소 편수	1편			
업적평가 최소 점수	60	9%		
대학 기여도 평가 최소 점수	60%			
강의평가 최소 점수	60%			

- 주1) 조교수 및 부교수(기초교원, 임상교원)의 최초 재임용 소요연수는 2년으로 하며, 소요 기간내, 연구실적은 100%이상(기초교원은 SCI 논문 1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주2) SCI 논문 최소 편수는 심의 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한다.
- 주3)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의학교육학 등 인문사회의학 전공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 편으로 SCI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주4)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소요 년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 주5)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 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1회(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조건부 재임용은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과대학장(의료원장)의 제안으 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6.08.)

2. 조교수 및 부교수 재임용 기준 (개정 2015.1.1., 2016.9.1. 2018.06.08)

구분	조교수		부교수		
	기초교원	임상교원	기초교원	임상교원	
최소 소요 년수	3년	3년	3년	3년	
최소 연구 실적	250%	200%	250%	200%	
SCI 논문 최소 편수	1편		1편		
업적평가 최소 점수	60)%	60%		
대학 기여도 평가 최소 점수	60%		60%		
강의평가 최소 점수	60% 60%)%		

- 주1) SCI 논문 최소 편수는 심의 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한다.
- 주2)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의학교육학 등 인문사회의학 전공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 편으로 SCI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주3)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소요 년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 주4) 2013년 4월 1일 현재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기초교원들은 재임용 시 최소 연구 실적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 주5)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1회(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조건부 재임용은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과대학장(의료원장)의 제안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6.08.) 주6) <삭제>

※ 기존교수 재임용 최소 연구실적 기준

(2013년	구분 4월 1일 기준)	2012년 이전 규정 연구실적 기준	2013년 이후 규정 연구실적 기준	승진 연구실적 기준	SCI 논문 편수
	1년차	0 %	250 %	250 %	1
	2년차	0 %	250 %	250 %	1
スコ人	3년차	0 %	250 %	250 %	1
조교수 	4년 차	200 %	0 %	200 %	0
	5년차	200 %	0 %	200 %	0
	6년차	0 %	250 %	250 %	1
	1년차	0 %	500 %	500 %	1
	2년차	300 % x 3/5	500 % x 2/5	380 %	1
부교수	3년차	300 % x 4/5	500 % x 1/5	340 %	0
	4년 차	300 %	0 %	300 %	0
	5년차	300 %	0 %	300 %	0

제7조(승진임용 절차) 승진임용 절차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8조(승진임용 심사기준) 승진임용 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1.)

	부교수	= 승진	교수 승진		
구분	기초	임상	기초	임상	
	교원	교원	교원	교원	
최소 소요 년수	6년	6년	5년	5년	
최소 연구 실적	1000%	500%	1000%	400%	
SCI 논문 최소 편수	2 편		2 편		
업적평가 최소 점수	70)%	70%		
대학 기여도 평가 최소 점수	70)%	70%		
강의평가 최소 점수	70% 70%)%		

- 주1) 전직대학의 최종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교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의 재직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승진 소요년수로 산정할 수 있다.
- 주2)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부교수 승진 시 최소승진소요년수가 7년이며, 교수 승진은 할 수 없다.
- 주3) 임상교원(병리학, 예방의학 포함)은 전문의 자격으로 박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다.
- 주4) 부교수 승진은 최근 6년 이내의 업적을, 교수 승진은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적용한다.
- 주5)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급의 논문만 인정한다.
- 주6) 대한의학회 등록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급으로 인정한다.
- 주7) SCI 논문 편수는 심의 대상자가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한다.
- 주8)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의학교육학 등 인문사회의학 전공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4 편으로 SCI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주9) 임상교원의 경우 교수승진 대상자는 연구실적기준 중 100%이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의 잡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 주10)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승진소요 년수 기간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세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 주11) 승진임용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육, 연구, 봉사 또는 진료 업적이 우수하거나 학

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의무부총장은 총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주12) 2013년 4월 1일 현재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기초교원들의 최소연구실적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 기존교수 승진임용 최소 연구실적 기준

(2013)	구분 년 4월 1일 기준)	2012년 이전 규정 연구실적 기준	2013년 이후 규정 연구실적 기준	승진 연구실적 기준	SCI 논문 편수
	1년차	0 %	1000 %	1000 %	2
	2년차	500 % x 3/6	1000 % x 3/6	750 %	1
スコム	3년차	500 % x 4/6	1000 % x 2/6	666.7 %	1
│ 조교수 │	4년차	500 % x 5/6	1000 % x 1/6	583.3 %	1
	5년차	500 %	0 %	500 %	0
	6년차 이상	500 %	0 %	500 %	0
	1년차	0 %	1000 %	1000 %	2
	2년차	400 % x 3/5	1000 % x 2/5	640 %	1
부교수	3년차	400 % x 4/5	1000 % x 1/5	520 %	1
	4년차	400 %	0 %	400 %	0
	5년차 이상	400 %	0 %	400 %	0

제9조(동일직급 최고 근무연한)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 제10조(정년보장) ①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사는 전임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 결과 70%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의무부총장의 재가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협력병원 겸직) ① 임상교육과 의료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 령 제24조의 2 제1항의 조건에 충족하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② 협력병원에는 임상교육과정 및 교원의 전공,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임상의학교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③ 겸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겸직교원 선정) ① 겸직교원의 선정은 의과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 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② 전항에 의해 선정된 겸직교원은 이사장이 협력병원에 파견한다.
- ③ 겸직교원의 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되,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 제13조(겸직교원의 복무 및 처우) ① 겸직교원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협력병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병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직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과 관련하여 협력병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병원에서 보수에 상당하는 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 ④ 협력병원에서는 보수 외에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원업적 평가) 기초교원은 기초의학교원의 업적평가규정, 임상교원은 임상의학교원 업적평가규정에 의해 평가한다. (개정 2015.1.1.)
-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신설 이전에 임용된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임상의학교원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조건부로 재임용한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조건부 재임용 실적으로 활용한 연구실적은 이후 재임용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

종류		저자 수					
		1인 2인 3인		3인	4인 이상		
	원저	100%	70%	50%	30 %		
	종(총)설, 증례 보고	33%	23%	16%	10 %		
논문	하이노므	석사	100%				
	학위논문	박사	200%				

- 주1) 논문은 의학 관련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만 인정한다.
- 주2)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SCI급 학술지에 한한다.
- 주3) SCI급 논문은 SCI, SCI(E), SSCI, SSCI(E), AHCI를 의미한다.
- 주4) 증례보고는 논문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주5) SCI급 논문은 인정비율을 2배로 인정한다.
- 주6)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비율을 1.5배로 인정한다.
- 주7) 공동연구자가 4인 이상의 논문, 종설, 증례일지라도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3인에 해당되는 점수를 인정받는다.
- 주8)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의 인정은 학위 취득 당해 직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 주9) 저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별첨 2>

임상의학교원 심사평정표

	소속:			평정자			
피평정자	직 급 :	· (학장/진료부원장/병원장/ 진료부장/기획처장)					
	성 명 :	성명 :			(인)		
구분			1	차 평	정		
평가영역	평 정 요 목	A (20)	B (15)	C (10)	D (5)	E (0)	
1.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20) 학 장	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자세 나. 학생지도에 대한 포용력						
2. 교수(진료) 능력과 실적 (20) 진료부원장	가. 진료실적 나. 환자에 대한 진료태도 다. 환자유인노력 라. 해당과의 특성화 노력						
3.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 병원장	가. 의사로서의 인격과 품성 및 사명감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4. 근무생활 (20) 진료부장	가. 출퇴근 상황 나. 진료시간준수여부 다. 규정이행도						
5. 기타사항 (20)	가. 병원발전을 위한 노력 나. 개인생활의 청렴도						
기획처장	소 계						
ठे	計계 (100 점)		(```) 점		

※ 평정방법 : 평정자는 평정요목을 종합하여 평가영역별 평정란 20점 ~ 0점 중 택l하여 √

기초의학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소 속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				
피평정자	직 급 : 성 명 :		성명 :		(인)
구 분				평정기준		
평 가 영 역	평 정 요 목	A (20)	B (15)	C (10)	D (5)	E (0)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사명감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다. 건강상태(연령 참작)	(20)	(15)	(10)	(5)	(0)
2.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20)	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자세 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다.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20)	(15)	(10)	(5)	(())
3. 대학발전 기여도 (20)	가. 보직활동 나. 정책과제참여 및 사업수주 다. 위원회활동 및 학교행사참여	(20)	(15)	(10)	(5)	(0)
4. 근무생활 및 청렴도 (20)	가. 근무자세 나. 타업무종사 관계 다. 개인생활의 청렴도 라. 규정준수 여부	(20)	(15)	(10)	(5)	(())
5. 기타 사항 (20)	가. 학내·학과간 인화관계 나. 적극성 및 책임감 다. 구성원간 업무협조 및 신뢰감 라.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	(20)	(15)	(10)	(5)	(0)
	소 계	()	()	()	()	()
	합 계 (100점)		()	점	

<별첨 4>

임상의학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직 급:	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 (학장/진료부원장/병원장/ 진료부장/기획처장)				
7007	성 명:	신료무상/기획저상) 심사위원 :			(인)	
구분	평 점 요 목		<u>7</u>	명정기 (<u>ح</u>	
평가영역	-	A (20)	B (15)	C (10)	D (5)	E (0)
1.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20) 학 장	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자세 나. 학생지도 능력과 자세 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2. 병원발전 기여도(진료) (20) 진료부원장	가. 진료활동 및 환자유치 노력 나. 환자에 대한 진료태도 다. 해당 진료과의 특성화 노력					
3. 교수로서의 기본적자질 (20) 병원장	가. 임상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사명감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다. 건강상태(연령 참작)					
4. 근무생활 (20) 진료부장	가. 근무자세 나. 진료시간준수 다. 규정준수여부					
5. 기타사항 (20) 기획처장	가. 원내 진료부서간 인화관계 나. 병원행사참여 다.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 라. 구성원간 업무협조 및 신뢰감					
	호 계(100점)					

※ 평정방법 : 평정자는 평정요목을 종합하여 평가영역별 평정란 20점 ~ 0점 중 택1하여 √